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64 발의연월일: 2020. 10. 8.

발 의 자:이은주·강민정·강은미

남인순 • 류호정 • 배진교

서동용 · 심상정 · 오영환

이성만 • 아수진비 • 이용빈

장혜영·최혜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렁으로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"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을 "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 인 지역사회재활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 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----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 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 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~ 3의2. (생 략)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4. -----제58조제1 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,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,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

	<u>설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